

메리츠 e-일등기업주식형투자신탁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메리츠 e-일등기업주식형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메리츠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 e-일등기업 주식투자신탁

1. 투 자 신 탁 명 메리츠 e-일등기업 주식투자신탁
2. 자 산 운 용 회 사 명 메리츠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명 및

상 담 가 능 전 화 번 호	메리츠증권(주)	☎ 1588 - 3400
	메리츠종합금융(주)	☎ 02 - 777 - 7720
	키움증권(주)	☎ 1544 - 9000
	하나은행	☎ 1588 - 1111
	SK증권	☎ 1599 - 8245
	대신증권	☎ 1588 - 4488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
니다.*

4. 작 성 기 준 일 2008년 10월 20일
5. 투 자 설 명 서 비 치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공시 및 인터넷 www.meritzam.com
계 시 주 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 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본문 6 쪽)

1. 명 칭 : e-일등기업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57627)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 류 :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적립식,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4. 자산운용회사 : 메리츠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 본문 6~8 쪽)

구 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비과세 및 소득공제혜택 : 세제우대시행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3년이상 적립투자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혜택. -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 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추구. * 비교지수= KOSPI200
2. 주요투자전략	- 펀드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 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창출.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 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 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meritzam.com)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채흥국	44세	부장	22개	1,134억	- 연세대 경제학과 - 메리츠종합금융 주식운용팀장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연평균수익률) : 2008-10-17 기준, 최초설정일: 2006-6-19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투자신탁	-39.00%	1.21%	-	-
비교지수	-37.80%	-10.69%-	-	-

* 비교지수= KOSPI200

이 실적은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본문 9~11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25%
		판매회사보수	연 0.25%
		기타보수	연 0.044%
		보수합계	연 0.544%
	기타비용	실비(0.01%)	
	총보수·비용비율¹⁾	연 0.544% + 실비(0.01%)	

주 1) 환매수수료는 90 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세제 사항

1)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 세제혜택 적용

- ① 적용대상: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② 가입자격: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개인
- ③ 가입한도: 분기별 300 만원 이내 (연 1,200 만원)
- ④ 투자기간: 3 년이상(적립식 투자시)
- ⑤ 세제혜택:
 - 소득공제: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1년차	2년차	3년차
불입액의 20%	불입액의 10%	불입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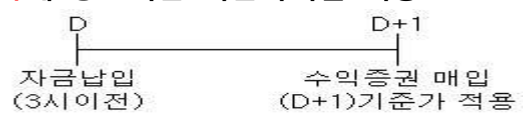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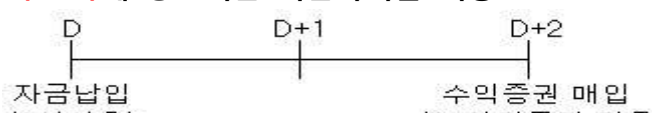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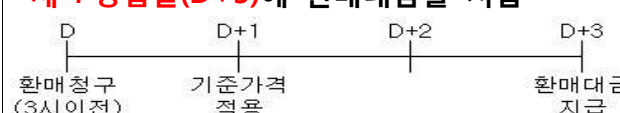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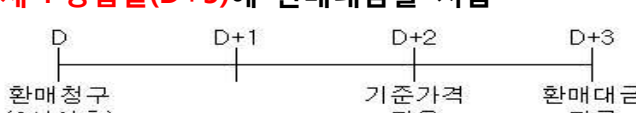
- 비과세: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포함)

2) 2009년 12월 31일 이후 가입 및 중도 정립계약 해지시(일부해지포함) 과세적용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주식매매차익 제외)에 대하여 **소득세등 (2008.10월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시~오후 시 분) 중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이후
매입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환매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2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p>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imeritzbank.com)를 통해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점포명)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은)는 (고객성명) 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200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e-일등기업주식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57627)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3. 종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적립식, 추가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메리츠자산운용(주)
5. 최초설정일등 2006년 6월 19일 설정
- 연혁 2008년 7월 28일 메리츠종합금융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

6. 수탁고추이

연도	현재 (08.10.17)	6개월전 (08.4.17)	1년전 (07.10.17)	1년6개월전 (07.4.17)	2년전 (06.10.17)
수탁고금액 (억원)	272	72	72	35	30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간접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업종 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 주식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투자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터넷 판매 전용 펀드로서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비교 했을 때 획기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상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투자자의 수익극대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수익자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주식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비교지수= KOSPI200

(AMAK 자산운용사 홈페이지(www.amak.co.kr)에서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월말 기준 비교지수의 변동율이란 전월 초 비교지수 대비 전월말 비교지수의 증감분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투자자는 동 펀드의 전월말 기준 수익률 변동율과 비교지수의 변동율을 비교함으로써 매입하신 펀드가 비교지수에 비해 잘 운용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요투자전략

가. 주요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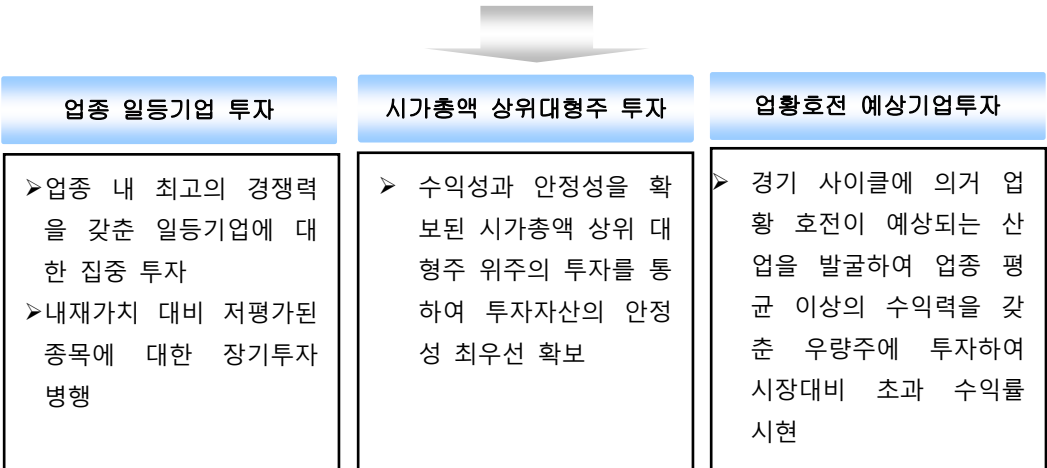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사전에 정의된 포트폴리오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일등주식으로 정의하여 자산총액의 60%이상을 편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일등기업주식이었으나 이후 일등기업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일등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기본에 충실한 운용
- 철저하고 과학적인 종목분석으로 투자대상종목 Pool 구성
- 펀드매니저의 장세판단에 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Active 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 일등기업 및 Bottom up 분석을 통한 저평가 우량종목 선정 및 거시경제/산업경기의 Top Down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구사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1.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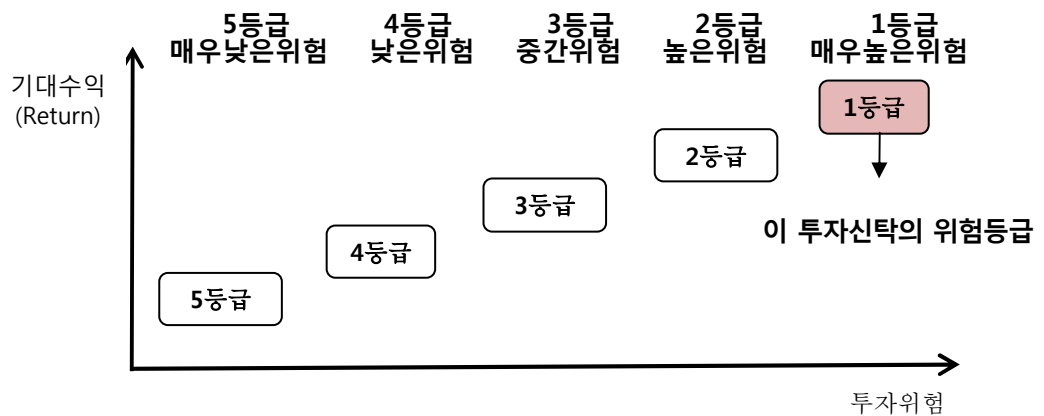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동성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 순자산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중 '2.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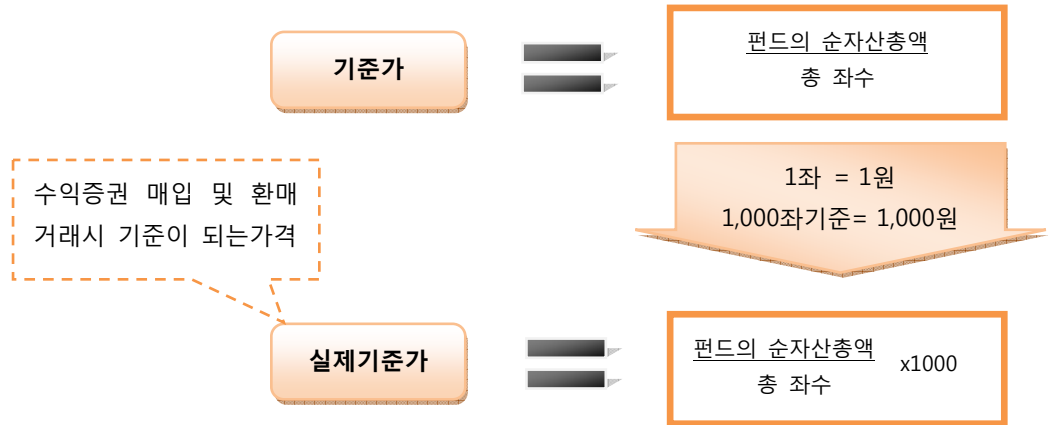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이 60% 이상~최대 100% 까지 투자하는 주식 등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높은 위험등급)**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 편입비중이 이 투자신탁 보다 낮은 혼합형투자신탁이나, 채권형투자신탁, MMF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상품예시] (Risk)

위험등급	분류기준	메리츠자산운용이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높은위험	메리츠빈티지주식투자신탁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중간위험	-
4등급	낮은위험	메리츠클리켓단위파생상품1호
5등급	매우낮은위험	메리츠안심국공채MMF1호(개인)

5.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자산운용회사(www.meritzam.com) · 판매회사 ·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경력 및 이력
채흥국	주식운용팀	부장	- 연세대 경제학과 - 메리츠종합금융 투자신탁본부 주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최근 1년차 (‘07.10.18~‘08.10.17)	최근 2년차 (‘06.10.18~‘07.10.17)
투자신탁	-39.01%	65.94%
비교지수	-37.80%	43.58%

* 비교지수 = KOSPI200

나.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6개월 (‘08.4.18~‘08.10.17)	최근 1년 (‘07.10.18~‘08.10.17)
투자신탁	-31.07%	-39.01%
비교지수	-30.05%	-37.80%

* 비교지수 = KOSPI200

Ⅲ.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지급시기)
수익자에게 직 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합 계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2. 투자신탁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연간,%)	비고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0.25%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25%	
	수탁회사 보수	0.025%	
	일반사무관리 보수	0.019%	
	기타비용	실비(0.01%)	-
	총보수·비용비율	0.544% + 실비(0.01%)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상품의 기타비용비율등을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8,170원	63,777원	69,925원	88,749원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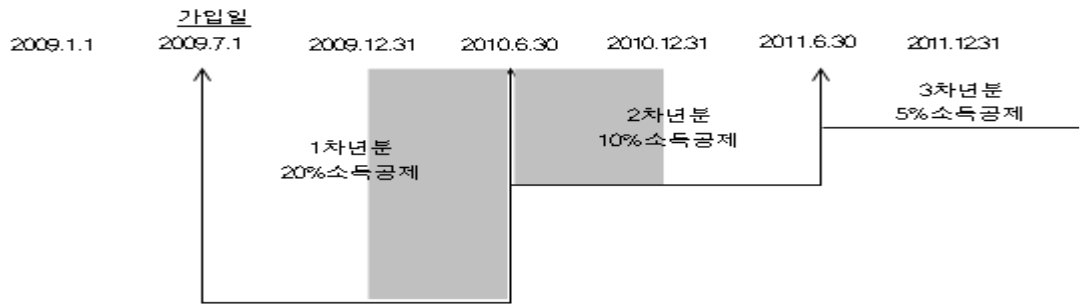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우측의 세율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중도해지시 : 해당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아래와 같이 추징됩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투자증권의 매매차익 등을 원천으로 합니다. 이러한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제상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만일, 투자신탁재산에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유입되는 시점에서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투자신탁재산에 특례를 적용하여 매월 각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익익월에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text{환매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6. 11월 말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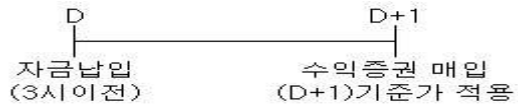
(1)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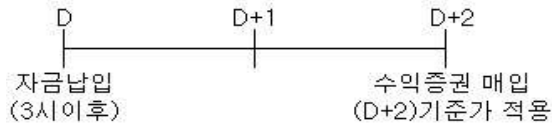
가. **오후 3시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주1)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당일 15시 [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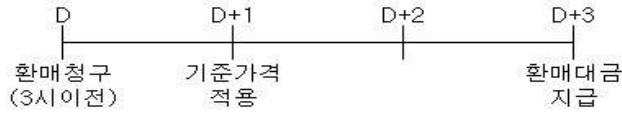
2.환매

(1)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5 시[오후 3 시]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2 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15시[오후 3시]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환매제한, 환매연기, 부분환매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4)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등의 분배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가.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주로 국내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펀드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 파생상품의 투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5%이하로 투자합니다.

나. 주요투자전략

-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종목들을 이 투자신탁의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래에 나열한 지표중 하나 이상 충족시 일등기업주식으로 정의됩니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일등기업주식이었으나 이후 일등기업주식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 기매입된 주식은 일등기업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일등기업 주식

- 업종 내 시장점유율, 시가총액, 업종 내 경쟁력, 브랜드를 고려하여 일등기업 선정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분류기준을 기초로 하여 신성장 세부업종은 별도업종으로 분리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업종특성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이용
- 다른 기업의 진입이 불가능한 진입장벽(기술, 규모, 가격 등)을 보유한 기업
- 일등기업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할 능력을 갖춘 기업
- 상기 항목 해당기업이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일등기업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기업

국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 시가총액이나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기업
-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군에 속한 업종 대표 기업

업황호전이 예상되는 종목

-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기업
- 15% 이상의 ROE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기업
- 절대주가가 저평가 되어있는 기업

다. 자산운용의 기본방침

- 기본에 충실한 운용
- 철저하고 과학적인 종목분석으로 투자대상종목 Pool 구성
- 펀드매니저의 장세판단에 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Active 운용

2.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와 같이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상장주식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에 따른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로서 신탁재산의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연기 또는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내용
① 국내주식	60% 이상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주식관련사채)	40% 이하 (40%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⑤ 금리스왑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⑥ 수익증권등	5%이하 (단, ETF에의 투자는 30%까지 가능)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15% 이하	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⑧ 투자증권대여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⑨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⑩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⑪ 고유자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108조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자산과의 거래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동일종목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정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증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증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hr/> <p>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동일회사 발행주식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p>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p>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Ⅱ. 자산의 평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자산의 평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2.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운용회사(www.meritzam.com)·판매회사(판매회사에 관한 사항 참조)·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인터넷홈페이지

Ⅲ.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거래> 가.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나.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③ 마케팅비용
-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⑤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다.선정절차

- 운용담당자는 상기 원칙에 의하여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을 세워야 함

-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은 준법감시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용담당자는 매매담당자에게 상기 중개회사별 매매배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중개회사에 매매의 위탁을 지정할 수 없음

<장내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동일함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 1.매입관련 유의
사항
- 2.환매관련 유의
사항

특이사항 없음

가.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전전일 15시 경과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포함)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다.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탁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부분환매 사유 및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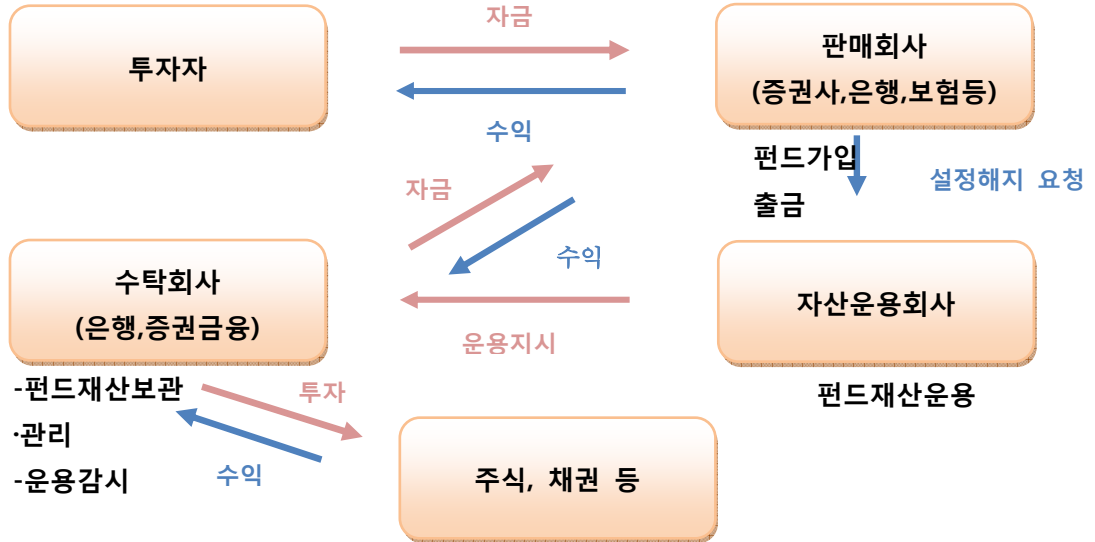
-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약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⑤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수탁 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펀드의 운용구조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메리츠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 TEL)6320-3000

2. 주요업무

-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
 - 자사의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
 - 투자설명서의 작성
 - 수익증권의 발행
 - 금융감독위원회 및 간접투자자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 업무

<의무 및 책임>

가.자산운용회사의 의무

-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나.자산운용회사의 책임

-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업무의 위탁> 법 제 9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 회사인 신한아이타스(주)에 위탁하며, 신한아이타스(주)는 법령과 약관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최근 2개 사업 연도의 요약 재무 내용

2008.7.11, 본인가 승인으로 해당사항 없음.

4. 운용자산 규모

(2008-8-13기준, 단위: 억좌)

증권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 산	실물	재 간 접	특별 자산	합계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1,104.	161.	1,026.	200.	20.	632.	488.			100.	3,73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다른운용자 산규모		
채흥국	45	부장	22	1,134억원	메리츠종합금융주 식운용팀장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사정에 따라 펀드매니저가 교체될 수 있습니다.

Ⅱ.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메리츠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1588 - 3400	www.imeritz.com
메리츠종합금융 (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84 서울파이낸스 센터 5층 ☎02 - 777 - 7720	www.imeritzbank.com
키움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1588 - 3400	www.kiwoom.com
하나은행(주)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9-10 ☎1588 - 1111	www.hanabank.com
SK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10 ☎1599 - 8245	www.priden.com
대신증권(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588 - 4488	www.daishin.com

2.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의무 및 책임> 신탁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할 때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기타 주요 사항을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판매행위준칙등>

①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판매행위준칙(이하 이 조에서 "판매행위준칙"이라함)을 제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판매행위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1.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
2. 투자자로부터 판매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판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는 제외)
3.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4. 허위표시 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행위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②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판매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판매회사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고유재산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다른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자산운용회사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함으로써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판매회사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협회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과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판매행위준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1 가 101-1 ☎ 1588-1111
회 사 연 혁	1991.7. 설립 1999.1. 통합 '하나은행' 출범 (충청은행/보람은행 합병) 2000.2 Allianz AG 전략적 제휴 체결 2002.12. 서울은행과 합병. 통합 '하나은행' 출범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의무 및 책임> 수탁회사는 투자설명서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투자신탁 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또는 기준가격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4층 ☎ 02) 2168 - 0400

2.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

투자회사의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무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종로구 세종 로 211번지 광화문 빌딩 9층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5-6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02-739-3590

2. 주요업무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간접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합니다.

제4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 <구성과 권한> (1)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2)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보수 또는 수수료 인상, 신탁회사 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 신탁약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익증권 환매의 연기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의결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은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2) 수익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의결방법> 수익자총회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안을 결의하게 됩니다.
(1)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0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익자는 자산운용사가 우편 또는 전자메일에 의하여 교부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도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업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수익자총회 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소집 주체 및 통지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최되며,
>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회사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2. 잔여재산분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투자신탁 해지에 따른 상환금 등을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판매회사에게 인도합니다.

수탁회사가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 등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탁약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2)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인 간접투자자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기준가격계산서
-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회계감사인인 회계감사는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과 이 투자신탁의 전체 수익증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수탁회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기공시 확인장소> 정기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변경> 신탁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1)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수탁회사의 변경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6)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증권예탁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②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의결권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2)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101조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자산운용회사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상기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수시공시 확인장소>

수시공시사항은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참고-펀드용어정리

용 어	내 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p>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수익증권	<p>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용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p>
수탁고	<p>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p>
신주인수권부 사채	<p>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p>
원천징수	<p>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p>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p>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p>
자산유동화증권	<p>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p>
전환사채	<p>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p>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철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

	<p>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p>
--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일 : _____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투자자 확인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